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00-15

제안연월일 : 2000. 4. .  
제안자 : 거창군수

## 개정이유

- 폐기물등의 불법투기행위의 적발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토록 하여 자원을 재활용토록 함.
-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 할 수 있는 행정체제 마련

##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의 용어 정의(안 제2조제9호및제13호)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안 제7조제6항)
-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은 25% 미만으로 발효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시는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함(안 제9조제2호)
-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시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 운반토록 함(안 제9조제5호)
-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는 재활용창구를 설치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안 제11조제4항)
-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생분괴성봉투로 함(안 제15조제2항)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군수가 일정금액을 부과(안 제21조제3항)
- 폐기물 등의 불법투기행위의 적발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부과금액의 5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함(안 제26조제4항)

## 개정근거

-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개정안 [경남환경제7507-11345(1999.11.25)]
- 환경오염행위신고자 포상금지급권장기준 [경남환경67421 - 1382(99.11.22)]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환경부예규제189호('99.8.9)]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농·축산물류 폐기물과”를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5호의 가목”을 “제3호의 라목”으로 하며, 동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하여 부산  
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건조에 의하  
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13.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제7조제1항중 “법15조제1항”의 규정을 “법제15조”의 규정으로 하고 “제5  
항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전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  
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군수가 정한  
음식물쓰레기전용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4호및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 하는자는  
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거  
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 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감량의무 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5.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 하여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중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의 군수는 다음에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자 또는” 을 삽입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제목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를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의 재질)”로 하고, 동조제2항 중 “폴리에틸엔과”를 “폴리에틸엔에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괴성 봉투와”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다음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할 수 있다제  
26조의 조제목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보상금 지급등)”을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포상금등)”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군수는 폐기물 등의 불법투기행위의 적발신고로 인하여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  
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까지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0조중 현물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적정  
재활용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야한다.”로 하고, 제6호 다음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하는자.

[별표6] 및 [별표7]호를 별지와 같이하며, [별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 (정의) &lt;생략&gt;</p> <p>7.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u>농·축산물류 폐기물</u>과 <u>먹고 남긴 음식찌꺼기</u> 등을 말한다.</p> <p>8.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u>가목</u>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p> <p>9. “음식물쓰레기감량화”라 함은 <u>음식물 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u> <u>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u></p> <p>10. 내지 12.(생략)</p>	<p>제2조&lt;현행과 같음&gt;</p> <p>7.----- ----- ----- ----- ----- <u>농·수·축산물류</u>      <u>쓰레기와</u> ----- ----- -----</p> <p>8.----- ----- ----- ----- -----</p> <p><u>제3호의 라 목</u>----- -----</p> <p>9. “음식물쓰레기감량화”라 함은 <u>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u></p> <p>10. 내지 12.(현행과 같음)</p> <p>13.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u>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u>를 말한다.</p>
<p>&lt;신설&gt;</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1.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제5조의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자, 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 · 퇴비화전문 중간처리업자,사료관리법제9조 및 비료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 · 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 · 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 · 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 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p>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 ·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 ·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 사료화 · 소멸화하여야 한다.</p>	<p>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p>
<p>3.&lt;생략&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3.&lt;현행과 같음&gt;</p> <p>4.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제15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p> <p>① &lt;생략&gt;</p> <p>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u>폴리에틸엔</u>과 P. P포대로 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p> <p>③ &lt;생략&gt;</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lt;생략&gt;</p> <p>① 내지 ② &lt;생략&gt;</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④ <u>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제15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와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의 재질)</p> <p>① &lt;현행과 같음&gt;</p> <p>②-----<u>폴리에틸엔에 생분해성 물질을 첨가한 생분괴성봉투와</u>-----</p> <p>-----</p> <p>-----</p> <p>-----</p> <p>-----</p> <p>-----</p> <p>③ &lt;현행과 같음&gt;</p> <p>④ <u>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u></p> <p>제21조 &lt;현행과 같음&gt;</p> <p>① 내지 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u>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u></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제26조(과태료의처분통지 및 보상금 지급등)            ① 내지 ③ &lt;생략&gt;            ④ 주민에 의한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p> <p>제30조 (보고, 검사등)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명기한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p>	<p>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p> <p>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할 수 있다.</p> <p>제26조(과태료의처분통지 및 포상금 지급등)            ① 내지 ③ &lt;현행과 같음&gt;            ④ 군수는 폐기물 등의 불법투기행위의 적발신고로 인하여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까지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p> <p>제30조 (보고, 검사, 지도, 점검등)            ①-----            -----            -----            -----            -----</p>



[별표 6]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및 제7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지</li> <li>-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li> <li>- 종이컵, 팩</li> <li>-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게 함</li> <li>-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li> <li>-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li> <li>-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li> <li>※ 비닐포장지는 제외</li>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li> <li>- 비닐코팅 부분 제거</li> <li>-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li> </ul>
2.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li> <li>-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li> <li>-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li> <li>-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li> <li>-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li> </ul>
3.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료수병, 기타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li> <li>- 담배꽂초등 이물질은 넣지 말것</li> <li>※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수 있음</li> </ul>
4. 영농폐기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빈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후 유리병, PET병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용 폐비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 집하장에 보관</li> </ul>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 고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li> <li>-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li> <li>- 위와 같음</li> </ul>
6.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T병</li> <li>- 우유병 , 요쿠르트병등 병 모양의 용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스티로폼, 농,수산물 포장상자 포장용, 완충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li>-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퍼스널 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 등이 직접 회수하여 배출</li> <li>- 수산용 폐부자, 음식물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받침용용기, 접시류, 가정용 생활용품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가능 표시제품 또는 지역 여건상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배출</li> </ul>
7.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섬유류</li> <li>- 기타의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li> </ul>
8.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쓰레기</li> <li>- 조리전,후 음식찌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 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li> <li>-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li> <li>- 비닐 병뚜껑 폐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li> </ul>
9. 기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블류, 카페트, 장판류, 호우스, 파이프, 폐식용유 등</li> </ul>

[별표 7]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 시설에 버린자(법 제7조)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 꺾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50	50	5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 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이상 200이하	100이상 200이하	100이상 200이하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이상 200이하	100이상 200이하	100이상 200이하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이상 500이하	200이상 500이하	200이상 500이하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동법 제44조의2 “폐기물 재생처리를 신고한자는 제외)	500이상 1,0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2.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가. 폐기물의 배출시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분리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 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0	50	50
	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100	100	100
	라. 음식물쓰레기를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100	200
	마. 생활폐기물배출자가재활용가능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0조 제3항)	1,000	1,000	1,000
	4.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	1,000	1,000	1,000
	5.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자가 음식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	500	1,0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신고서,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6. 음식물쓰레기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법제12 조관련)	1,000	3,000	5,000
	7.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 조 제3항)	300이하	700	1,000
자원의절약 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1.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5항) 가. 객실과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식품 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 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료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 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3,000	3,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 률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00	1,000	3,000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1,000	3,000
	라.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개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3,000	3,000
	마.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바.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사.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아.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2,000	3,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률	자.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자의 설치, 운영(영 제 1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다)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차,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00	1,000	3,000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영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3.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2항)	500	700	1,000
4.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제34조제3항)	300	500	1,000	

